죽전역 코아루 더 리브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신탁사업 고지**

- 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강호디앤씨,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2020.01.14.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2020.06.02. 변경 신탁계약 및 2020.07.15. 2차 변경 신탁계약 포함)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죽전역 코아루더리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jj-koaroo.kr)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은 빠른 등기우편(자격서류 제출방식은 홈페이지 등 별도안내 예정)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견본주택 관람은 대구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공동주택이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전에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 : www.jj-koaroo.kr]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준수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미성년자가 아닌 가족에 한하여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동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참 필수)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체온 측정 결과 37.5℃가 넘는 분은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됩니다.
- 해외체류 후 6월 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분은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됩니다.

■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일정 및 견본주택 운영방식 변동 관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견본주택 운영이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안내**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053-656-9929)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거 비규제 지역 내 거래가격이 6억원
-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2020.03.13.부터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4.)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 및「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01.24.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에 대한 유권 해석 변경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11호 (적용시점 : '19.07.25일 이후 청약신청분부터 적용)]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의미함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 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 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j-koaroo.kr)에 공개됩니다. 단,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 관련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 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020. 08. 03일(월)	2020. 08. 04일(화)	2020. 08. 05일(수)	2020. 08. 11(화)	2020. 08. 24(월) ~ 2020. 08. 26(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자인 경우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능 (10:00~16:00) ※ 은행접수 불가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00-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부동산개발업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등록번호 0800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과-37033(2020.7.22.)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6층, 2개동 총 2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3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8세대) 포함]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가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아파트	2020000890	01	84.9429	84A	84.9429	28.4015	113.3444	46.8875	160.2319	12.3094	115	12	9	23	3	47	68	1
	2020000890	02	84.9798	84B	84.9798	29.1127	114.0925	46.9078	161.0003	12.3147	117	11	9	23	3	46	71	2
	2020000890	03	108.2098	108	108.2098	35.8574	144.0672	59.7306	203.7978	15.6811	39	-	9	-	2	11	28	1
	2020000890	04	132.5755	132	132.5755	45.9838	178.5593	73.1802	251.7395	19.2121	2	-	-	-	-	-	2	-
	2020000890	05	150.8946	150	150.8946	51.1010	201.9956	83.2921	285.2877	21.8668	1	-	-	-	-	-	1	-
	-	합계	-	-	-	-	-	-	-	-	274	23	27	46	8	104	170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 분	타 입	층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VAT	계	계약 체결 시	2021.02.15.	2021.08.15.	2022.02.15	2022.08.15	2022.12.15	2023.04.15	입주지정일
아파트	84A	6층이하	1	208,219,972	382,140,028	-	590,360,000	59,036,000	59,036,000	59,036,000	59,036,000	59,036,000	59,036,000	59,036,000	177,108,000
		7층-9층	9	209,292,180	384,107,820	-	593,40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178,020,000
		10층-14층	15	211,440,123	388,049,877	-	599,490,000	59,949,000	59,949,000	59,949,000	59,949,000	59,949,000	59,949,000	59,949,000	179,847,000
		15층-19층	15	212,604,033	390,185,967	-	602,790,000	60,279,000	60,279,000	60,279,000	60,279,000	60,279,000	60,279,000	60,279,000	180,837,000
		21층-29층	27	214,660,274	393,959,726	-	608,620,000	60,862,000	60,862,000	60,862,000	60,862,000	60,862,000	60,862,000	60,862,000	182,586,000
		30층-39층	30	217,234,984	398,685,016	-	615,920,000	61,592,000	61,592,000	61,592,000	61,592,000	61,592,000	61,592,000	61,592,000	184,776,000
		40층-45층	18	217,453,658	399,086,342	-	616,540,000	61,654,000	61,654,000	61,654,000	61,654,000	61,654,000	61,654,000	61,654,000	184,962,000
	84B	6층이하	2	208,223,499	382,146,501	-	590,370,000	59,037,000	59,037,000	59,037,000	59,037,000	59,037,000	59,037,000	59,037,000	177,111,000
		7층-9층	9	209,299,234	384,120,766	-	593,420,000	59,342,000	59,342,000	59,342,000	59,342,000	59,342,000	59,342,000	59,342,000	178,026,000
		10층-14층	15	211,443,650	388,056,350	-	599,50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179,850,000
		15층-19층	15	212,607,560	390,192,440	-	602,80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180,840,000
		21층-29층	27	214,663,801	393,966,199	-	608,630,000	60,863,000	60,863,000	60,863,000	60,863,000	60,863,000	60,863,000	60,863,000	182,589,000
		30층-39층	30	217,242,038	398,697,962	-	615,940,000	61,594,000	61,594,000	61,594,000	61,594,000	61,594,000	61,594,000	61,594,000	184,782,000
		40층-45층	18	217,457,185	399,092,815	-	616,550,000	61,655,000	61,655,000	61,655,000	61,655,000	61,655,000	61,655,000	61,655,000	184,965,000
		46층	1	217,552,414	399,267,586	-	616,820,000	61,682,000	61,682,000	61,682,000	61,682,000	61,682,000	61,682,000	61,682,000	185,046,000
	108	6층이하	1	266,192,064	488,661,760	48,866,176	803,720,000	80,372,000	80,372,000	80,372,000	80,372,000	80,372,000	80,372,000	80,372,000	241,116,000
		7층-9층	3	267,563,232	491,178,880	49,117,888	807,860,000	80,786,000	80,786,000	80,786,000	80,786,000	80,786,000	80,786,000	80,786,000	242,358,000
		10층-14층	5	270,308,880	496,219,200	49,621,920	816,150,000	81,615,000	81,615,000	81,615,000	81,615,000	81,615,000	81,615,000	81,615,000	244,845,000
		15층-19층	5	271,795,968	498,949,120	49,894,912	820,640,000	82,064,000	82,064,000	82,064,000	82,064,000	82,064,000	82,064,000	82,064,000	246,192,000
		21층-29층	9	274,422,384	503,770,560	50,377,056	828,570,000	82,857,000	82,857,000	82,857,000	82,857,000	82,857,000	82,857,000	82,857,000	248,571,000
		30층-39층	10	277,717,824	509,820,160	50,982,016	838,520,000	83,852,000	83,852,000	83,852,000	83,852,000	83,852,000	83,852,000	83,852,000	251,556,000
		40층-45층	6	277,992,720	510,324,800	51,032,480	839,350,000	83,935,000	83,935,000	83,935,000	83,935,000	83,935,000	83,935,000	83,935,000	251,805,000
	132	46층	2	574,588,944	1,054,800,960	105,480,096	1,734,870,000	173,487,000	173,487,000	173,487,000	173,487,000	173,487,000	173,487,000	173,487,000	520,461,000
	150	46층	1	650,049,552	1,193,327,680	119,332,768	1,962,710,000	196,271,000	196,271,000	196,271,000	196,271,000	196,271,000	196,271,000	196,271,000	588,813,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한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로 친환경주택 수준, 친환경주택 성능 등에 관한 고지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성능등급에 관한 고지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 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 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계약하는 사항이므로 대금납부계좌와 대금납부처, 대금납부방식, 계약체결의 주체, 하자관리 등은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기 바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목적물의 면적은 사업부지의 분할,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등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금액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 제곱미터(㎡) 당 분양가격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정산하기로 하되, 정산시 분양면적 증감이 2% 미만일 때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오피스텔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계약면적에 포함되는 시설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되어 있음.
- 오피스텔은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84A Type이 설치될 예정이며 84B, 108, 132, 150 Type은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비치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모형 또는 이미지, 분양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

구 분		84A	84B	108	132	150	합계
일반(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3	3	-	-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	-	-	4
	중소기업 근로자	2	2	-	-	-	4
	장애인	3	2	-	-	-	5
	소 계	12	11	-	-	-	2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9	9	-	-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5%)	18	18		-	-	36
	일반공급(25%)	5	5		-	-	10
	소 계	23	23		-	-	4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2	-	-	8
합 계		47	46	11	-	-	10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특별공급 공통 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 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전 국</th><th>대구광역시</th><th>경상북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미성년 자녀 4명 35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한부모 가족 5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말함) 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공급세대수의 20%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07.24.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07.24. 전 기존 주택(등기완료에 한함)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0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 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 :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①재직증명서(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해당 직장 ②세무서/해당 직장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재직증명서 ②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미신고자	①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사업자등록증	①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 직장/세무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 직 자		①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공고) 시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를 도와드리며,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함.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Ⅲ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01.24.)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영주택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1순위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85㎡초과	추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영 주택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2순위	추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추첨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구분	내용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점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 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내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구분	내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구분	내용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1.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2020년 8월 3일(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죽전역 코아루더리브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년 8월 4일(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년 8월 5일(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대상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지원 시 직계존비속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O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 원의 소득입증서류)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입양의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견본주택에 비치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또는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 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V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 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공통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 불가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년 08월 11일(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0년 08월 24일(월) ~ 2020년 08월 26일(수) (10:00~16:00) •방법 : 당첨자 방문예약 후 계약체결 및 우편접수 (당첨자발표이후 홈페이지등 별도 안내 예정)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jj-koaro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감정원(숓 은행청약자)
이용기간		2020년 08월 11일(화) ~ 2020년 08월 20일(목) 10일 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화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년 08월 11일(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제출방법	제출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년 08월 13일(목) ~ 2020년 08월 20일(목) 8일간, 10:00 ~ 16:00	우편접수(빠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방식은 홈페이지등 별도통보 예정)	방문접수 : 당사 견본주택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00-1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안내 예정 죽전역 코아루더리브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안내 예정		

■ 계약금 납부 일정 안내

구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2020년 08월 24일(월) ~ 2020년 08월 26일(수), 3일간

※ 기간 내 미입금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및 스타일옵션 계약금 포함)
※ 예비당첨자 일정은 정당계약 이후 개별통지 예정.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빠른 등기우편으로 당첨자의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자격에 대한 서류를 상기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른 등기우편으로 상기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계약금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특별공급	O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자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지참 (본문「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내용 확인)
일반공급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피부양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피부양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 사실 삭제 요청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 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위탁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103-89953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상환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함.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는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 은행을 알선하여 분양계약자가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는 발코니확장계약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대출기관 미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하겠음. (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현장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10일이내에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변경(DTI,LTV,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등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23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2개소(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Ⅶ 추가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확장 납부 계좌 및 관련 공사비**

- 발코니 확장비용 계약금 잔금은 계약체결전에 아래의 계좌로 납부지정 일자에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 하여야하며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 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비용	우리은행	1005-203-8995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하시기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5동02호 홍길동 → 105302 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발코니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VAT 포함)	계약금(10%)	잔금(90%)
84A	11,550,000원	1,155,000원	10,395,000원
84B	11,550,000원	1,155,000원	10,395,000원
108	14,630,000원	1,463,000원	13,167,000원
132	17,600,000원	1,760,000원	15,840,000원
150	19,580,000원	1,958,000원	17,622,000원

※ 발코니 확장 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발코니 확장공사는 주문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해당 공사 착수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 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단열재 설치에 따른 천장 마감 높이,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 카달로그보다 다소 두꺼워질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수 있음.
- 발코니비확장시 냉매 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등의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발코니비확장에 따른 세부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상기 발코니확장은 일괄확장을 전제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음.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대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위치는 상이하니 계약전 기본형과 해당부위를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설치비

1)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84A/84B/108	선택 ①	**2대**	거실, 안방(침실1)	**3,200,000**	
	선택 ②	**4대**	거실, 안방(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132/150	선택 ①	**2대**	거실, 안방(침실1)	**3,300,000**	
	선택 ②	**4대**	거실, 안방(침실1), 침실2, 침실3	**6,10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임.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냉매배관만 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2) 빌트인 가전

<table>
<tr><th rowspan="2">품목</th><th rowspan="2">주택형
(약식표기)</th><th>유상옵션 미선택시
(무상설치형)</th><th colspan="3">유상옵션 선택형</th><th rowspan="2">비고</th></tr>
<tr><th>품목</th><th>품목</th><th>제조사</th><th>금액</th></tr>
<tr><td>하이브리드 쿡탑</td><td>전타입</td><td>3구 가스쿡탑
(파세코)</td><td>하이브리드쿡탑
(가스1+인덕션2)</td><td>SK매직</td><td>840,400</td><td></td></tr>
<tr><td rowspan="2">에어드레서(의류관리기)</td><td>84A,
132, 150</td><td>복도장</td><td rowspan="2">에어드레서
(의류관리기)</td><td rowspan="2">삼성전자</td><td>1,258,000</td><td></td></tr>
<tr><td>84B, 108</td><td>복도팬트리선반</td><td>1,258,000</td><td></td></tr>
</table>

※ 가전제품관련 유의사항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임.
- 에어드레스 선택시 공간 제습을 원하는 경우 기기의 도어를 열고 가동해야 가능한 제품이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상기 가전제품의 브랜드 또는 모델 (견본주택 설치 가전 포함)은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3) 주방상판/벽 선택옵션

품목	타입	유상옵션 미선택시 (무상설치형)		유상옵션 선택형			비고
		주방/아일랜드상판	벽	주방/아일랜드상판	벽	금액	
주방마감재 (상판/벽)	84A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2,723,000	
	84B					2,723,000	
	108					3,267,000	
	132					3,439,000	
	150					4,194,000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132, 150 타입의 보조주방 상판과 벽은 본 유사옵션에서 제외됨

4) 현관 중문 (3연동)

품목	주택형(약식표기)	금액	비고
현관 중문 (3연동)	84A	1,110,000	
	84B	1,230,000	
	108	1,265,000	
	132	1,110,000	
	150	1,110,000	

※ 중문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유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중문의 유리는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음.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음.

5) 알파룸 공간디자인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유상옵션 미선택시 (무상설치형)	유상옵션 선택형		비고
		품목	품목	금액	
주방 수납강화형 팬트리	84A	침실형 알파룸	수납강화형 팬트리 + 장식장	1,688,000	
	84B			1,688,000	
	108			1,943,000	

※ 유의사항

- 본 추가 품목 미선택시에는 여닫이 목문이 설치된 침실형 알파룸이 시공되며, 우물천정의 크기, 조명의 수량,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무상 선택 옵션에 따라 식탁들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판과 벽은 유상옵션 선택형을 설치시에도 무상설치형과 동일하게 인조대리석(상판), 타일(벽체)로 시공됨. 이에 견본주택과 동일한 선택품목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3) 주방상판/벽 선택옵션에서 주방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을 동반 선택하여야 함.
- 선택하신 알파룸 유상옵션안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디자인, 장량, 설치위치는 상이함.

• 알파룸 선택제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 설치 위치는 상이함.

■ 마이너스 옵션

1)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마루,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 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 품목
바닥재	바닥재(강마루,현관바닥타일,현관디딤판),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시멘트 몰탈 포함)	바닥난방_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화장실 방수, 발코니 우수선홈통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초배지 포함) 멱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시트등), 결양칸막이주방벽타일, 가구픽스판넬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체: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켠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천장틀+석고보드, 소방시설(설비, 전기), 월패드, 도어폰, 전기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등의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 욕조틀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풍기, 욕실장, 액세서리, 코킹 재료분리대,욕실폰, 비데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 탈수기 등)	설비배관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수납장, 각종 선반, 정동빨래건조대, 보일러, 전열교환기, 각실 온도 조절기	
창호	목재(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발코니샤시	목재문(공틀문 포함)의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84A	84B	108	132	150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3,614,000	23,624,000	30,082,000	36,855,000	41,948,000

4)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신청은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 금액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 하여야 함.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 건축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시 하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 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 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쿡탑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가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가스 또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를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조명,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발코니 비확장(기본형)세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 천장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Ⅷ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견본세대(공사용)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하며 견본세대는 내부 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 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견본주택 안내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견본주택 입장 및 관람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접건물의 위치 및 높이에 의하여 채광간섭,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변경)허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및 주거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단지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음.
- 대지 서측면은 인접대지와 면해 있어 상호간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와 기부채납하는 도로 등은 착공 후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포장재, 담장, 세부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자체의 도시계획도로 변경 계획 진행여부 등에 따라, 단지주변도로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의 위치, 도로 선형, 포장레벨,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의 남서측, 남동측, 동측 인접지에 40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건설 및 개발예정에 있으며(당 사업과 무관) 이로 인해 채광간섭,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인근 장동초등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적정 배치가 불가능하나, 추후 교실 3실 증축(부대시설 포함) 재원 확보 시 적정 배치가 가능함. 다만, 장동초등학교의 증축 재원 확보 시에도 공사 미준공 시 입주 학생의 적정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중학생은 8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함
-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함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허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지상6층 공용부 난간에 의하여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실외기실 바닥에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노출배관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되는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빨래건조대 등의 사용이 제한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 출입구 또는 입주자가 점용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단위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관련 도면과 자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 경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기준에 맞는 건축법을 적용하여 주거복합 형태로 설계된 부분으로 단지 외부환경 관련하여 소음 및 분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 인접 건물로 인한 시야가 차단됨을 확인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한 상업시설 및 단지 내 각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동간거리로 인해 각 세대 측벽 창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경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 상 주동형태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모형에 표현된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수종, 식재개수), 바닥포장(재질, 패턴, 색채, 크기), 조경시설물(위치, 크기 재질, 색채), 어린이놀이터(놀이시설물, 포장, 색상, 재질), 주민운동시설(운동시설물, 포장, 색상, 재질)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동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 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경관 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최상층은 저수조(소화수조) 및 기계장비, 휀룸, 지붕의 우수 및 오수 배관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외벽 및 옥상,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설비 및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호간에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과 인접 동에서 볼 때 미관저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층에는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휀룸, 소방용펌프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상하부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계단실 이용시 지상20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통하여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심의에 따라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조성된 공지로 입주민 외에도 일반인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임.

- 사업지 내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필로티 및 보행통로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 벽체는 석재뿜칠공법 또는 석재미장공법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상 필요 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상1층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출입구 이용시 미관 및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부대토목 구간 중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식재와 조경시설물, 포장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집적소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 1개소로 계획되어있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소는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보관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어린이 놀이터는 지상6층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활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배치도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 저층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들은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쓰레기집적소의 악취, 분진, 소음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물건 내·외부 조경, 시설물,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실외기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시설 및 오피스텔의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실외기 장비, 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에서의 이의 제기 및 시설물의 임의 해체, 변경을 할 수 없음.
- 배치도 및 모형 등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현장은 방화지구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세대 외벽 및 외벽창호 상부에 소화설비인 드렌처가 설치되며, 그에 따라 주동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스프링클러 및 드렌처 설비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 불가함.
- 주방 및 욕실 배기는 각 세대 외벽에 직배기로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세대의 환기구를 통해 악취,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2, 150 TYPE(45층)의 하부층(44층)은 침실 및 알파룸 등에서 욕실배관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의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 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고, 세대내 일부 실 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함.
-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삿짐의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당 건물은 고층 아파트로써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대 방화문 여닫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 완화를 위해 추가 시설(도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상1층 보·차도에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자동차전용구역이 표시되며, 위치는 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음.
- 주차장 진출입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리되어 사용하나 진출입 시 혼잡하거나 대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지하1층~지하2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진입 및 사용할 수 없음.
- 주차장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 지상 4.5m로 시공될 예정임
- 주차장 진입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차량 높이 2.7m 이상) 등의 진입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주차구획은 지상1층~지상5층으로 설계되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과 분리되어 있으나(1층 일부 제외) 구조적으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정주차구획운영은 관리주체 책무임.
- 주차장 차로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대형차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총 5개소) 설치 공간은 지상3층 ~ 지상5층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옥탑 시설물, 커뮤니티 입면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효율적인 시설(소방시설 및 설비 등)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주체가 관리함.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로 인해 소음, 진동,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소방법령과 소방설계 심의사항에 따라서, 화재 발생 등의 비상 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피난동선이 서로 겸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해 있는 인근 세대는 냉방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는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본 건물 외관에 시행사 및 시공사의 CI 또는 BI 브랜드용 광고물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수분양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인접한 세대는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용 조명,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 예정으로, 디자인 및 규모는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 진행 될수 있음.(조경 공간의 추가 구성으로 보행동선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관련법규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화재 시 오피스텔 내부와 공용부위 배연을 위한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고, 이를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량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의 경우, 미관저해 및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성능위주 설계에 따라 옥탑1층에 설치되는 수화수조는 콘크리트 수조에서 실시공시 내진탱크 형식으로 유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 성능위주 설계 심의사항으로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공동주택 지상2층~지상5층 출입문, 오피스텔 지하1층~지하2층 출입문 및 서측 계단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오피스텔에서 통행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입주민도 오피스텔 지하1층~지하2층 계단을 통하여 피난이 가능함

■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홍보를 위한 CG 및 모형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사가 지정된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도배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본 공사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인조대리석과 인조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 선반가구), 외부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마루, 온도조절기, 조명, 배선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이 건축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건축허가도면을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됨.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
- 각 세대의 기준 천장고(거실, 주방, 침실)는 2.3m이며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세탁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의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욕실 문턱과 주방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슬리퍼)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외창에는 소방법령에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으로 설치되며, 해당세대의 창호와 형태, 열림 방식, 유리사양 등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소방관 진입창은 창규격과 난간설치유무, 난간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 84A의 대피구역과 84B, 108, 132, 150타입의 침실1의 발코니의 외부창은 화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하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수정)
- 84B, 108, 132, 150타입의 발코니1에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의 내측 전면 하부에는 소방관 진입용 고정식 발판이 설치되어 발코니 실사용 면적 축소 및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6층의 대피구역에 설치되는 양개형 여닫이창(소방관 진입창 포함) 대신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될 예정임
- 본 공사시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면에는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유리창 중앙에 지름 20cm이상의 붉은색 역삼각형과 창문 모서리에 지름3cm이상의 원이 표기되어 내·외부의 미관 저해와 조망 및 채광,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 제거 및 변경 또는 폐쇄(창호 폐쇄, 물건 적치 등 포함) 등 소화 및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 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천장 및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마감재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디자인, 형태, 크기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석재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재료간 맞닿는 부위는 코킹처리 하여 마감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복도 및 거실에 설치되는 판넬 줄눈의 폭,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빌트인 제품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단위세대 내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가구 설치를 위한 세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될 수 있음.
-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132, 150 타입의 테라스는 수전 및 배수구(배수용)가 설치되지 않음.
- 132, 150 타입의 보조주방 수전은 터치형이 아닌 일반 레버형 주방 수전으로 설치될 예정임.
- 실외기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평면 계획상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욕실 내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위생도기류 하부에는 제외됨.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공동시설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공동시설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상부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외기실 상부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는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이며, 본 공사시 내측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시공여건 등에 따라 동등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소방 성능위주 설계에 따라 각 세대의 대피구역은 평상시의 사용이 불가하며,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고,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에 1개소씩 설치되는 대피구역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 내부에는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구 덮개 개방 후 하향식 사다리를 통해 하부층으로 피난할 수 있음. 단, 132, 150타입에는 세대 외부에 대피구역 및 하향식 피난구가 1개소가 추가 설치됨.

- 각 세대별 대피구역에는 비상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홀수층과 짝수층(지상9~16층만 해당. 단, 102동 84B 2호라인 세대는 지상7~10층에 설치)이 서로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을 위한 개구부 하부에는 발판(접이식 또는 완강기 케이스 일체형 등)이 설치되며, 발판 및 완강기 설치 위치에 따라 해당 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소화 및 피난을 위해 설치되는 대피구역, 하향식 피난사다리, 소방관 진입창, 완강기 등을 임의 제거 및 변경 또는 폐쇄(창호 폐쇄, 물건 적치 등 포함)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하층 세대간 보안을 위하여 피난구 덮개 개방시 건축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발생되며, 비상시 대피를 위한 시설로 파손 및 변형, 물건 적재 등 대피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발코니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됨
- 현관 마루굽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개별 보일러 설치로 인해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실내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소유한 가전기기 사양, 용량에 따라 수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되어 생활 상 불편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배관 등의 설비설치로 인해 수납이 어려울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분양건축물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시행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며, 그에 따라 천장 또는 바닥의 공간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층별 및 세대별로 위치 및 사이즈가 상이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대피구역은 노대(발코니) 부분으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었으며, 132, 150타입의 외부 대피구역은 전용면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됨.(추가)
- 대피구역, 일부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의 경우 엘리베이터 홀(제연공간)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계약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으로, 입주 후 해당 외부공간이 면한 해당층 세대가 이용할 수 있으나 내부공간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대를 통해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세대의 외부공간 이용에 대하여 다른 세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해당 세대는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 및 해당 세대가 외부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항 하자의 보수는 해당세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을 설치하나 통풍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빗물이나 생활용수에 의하여 하부세대에 일부 선홈통 설치 및 소음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의 외부 마감재 설치 유뮤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면적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판단은 동급 이상의 자재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생산 납기 등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시공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또는 동급(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 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 세대와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는 유상옵션 적용 상태로 전시되었으며, 옵션 미선택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복도, 거실, 침실, 주방 등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기기들의 위치는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유도등,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은 난방이 불가한 냉방전용 제품이며 설치 위치도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 세대 가구 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 문구는 당사가 제안하는 수납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며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부착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X 기타 사항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Ⅶ - 0.22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건축·기계·토목감리	전기·통신·소방감리	비 고
회사명	㈜태창티에이씨건축사사무소	㈜한백에프앤씨	
감리금액	1,800,000,000	75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0-104-0001700호	125,214,110,000원	2023년 11월 30일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 (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080010호
 - 영업소 소재지 : ㈜한국토지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건축허가(사업승인번호) : 대구 달서구 2019-건축과-신축허가-139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73번지 일원 / 공동주택 274세대(2개 동), 오피스텔 102호실(1개 동), 기타 복리시설 / 지하 2층, 지상46층 / 지목 : 대, 답, 장, 공장용지 등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착공	준공(예정)	입주(예정)	공급예정일
2020년 6월	2023년 10월	2023년 11월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예정)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지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분양대행사 : ㈜가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주체(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강호디앤씨	(주)한국토지신탁	(주)이테크건설	㈜가람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1015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송암빌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화길 89, 상가호 105
법인등록번호	110111-7044938	110111-1258220	110111-0327555	134611-0074744

■ 홈페이지 : (www.jj-koaro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00-1 죽전역 코아루더리브 견본주택 (TEL. 053-656-9929)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